



MINI Market Report

국가	인도네시아
제품	저나트륨소금, 식염소금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CONTENTS

I. 인도네시아 마케팅 방안	1
1. 현지 시장 특징	1
2. 현지 시장 전략 TIP	2
II. 인도네시아 시장 정보	3
1. 식염 수입추이	3
2. 소금 시장동향	4
3. 소금 경쟁제품 동향	5
III. 인도네시아 가격 정보	8
IV. 인도네시아 유통 정보	9
1. 유통 FLOW	9
2. 유통구조	10
V. 인도네시아 통관 정보	14
1. 관세 및 기타 세금	14
2. 수입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16
3. 인도네시아의 관세 혜택 제도	33
VI. 인도네시아 검역 정보	30
VII. 인도네시아 라벨링 정보	32
VIII. 인도네시아 바이어 정보	37

※ 참고자료

I 인도네시아 마케팅 방안

1. 현지 시장 특징

□ 소금 자급자족 가능

- 한때 인도네시아는 소금 소비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점차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수입에만 의존하던 소금을 2012년 이후 소금을 자급하고 있음
- 2013년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소금 재고가 52만 1,308 톤으로 늘어서 2014년에 소금을 수입할 필요가 없음

□ 저나트륨 소금 소비 증가

- 정부에서 소금의 많은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으며 저나트륨 소금을 권장하는 추세
- 건강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어 저나트륨 소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

□ 해외 고급 식품 선호

- 경제력이 있는 화교(약 1,000만명)를 중심으로 이뤄진 상류층은 고급스럽고 비싼 외국식품과 음식을 선호하고 있음
- 중상류층은 제품성분, 안전마크, 할랄마크(무슬림 소비자)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하며, 최근에는 고품질·안전·유기농식품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

□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선호 증가

- 의료비가 고가인 인도네시아는 건강·기능성 식품을 애용하고 있는 가운데, 식수는 석회성분이 많아 미네랄워터 수요가 많으며, 프랑스 다농사의 현지 사업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아쿠아'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

□ 롯데마트 현지 진출 후 사업 확장

- 롯데마트는 지난 2008년 현지 슈퍼마켓 체인 인수를 통해 현지 진출한 이후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에 38개 매장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제품 판매 비중이 높은 편임

2. 현지 시장 진출 TIP

□ 현지 진출한 한국 유통채널 통해 진출하는 방안 고려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롯데마트가 37호점을 개설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마트에 우선하여 롯데마트를 통한 현지 진출 방법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음

□ 무슬림 시장 진출 시, 할랄이 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

- 이슬람 국가에서 정부차원에서 할랄 인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점차 할랄 인증이 비즈니스화되는 측면이 있음
- 할랄 인증은 초반에 관습법적인 측면이 강했지만 점차 ISO 같은 인증과 같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인증화되고 있음
- 서구 시장에 ISO 등이 없이 진입하기 어려운 것과 같이 이슬람 국가에는 할랄 인증 없이 진입이 용이하지 못함
- 최근 전세계적으로 FTA로 인해 국가간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랄이 새로운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식품은 현지에서 낯선 식품이기 때문에 현지 소비자들이 더욱 할랄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할 것임

II 인도네시아 시장 정보

1. 식염 수입추이

□ 식염은 전체 식품 카테고리에서 HS CODE가 「2501.00.9010」로 파악되었음

< HS CODE >

2501.00	소금, 순염화나트륨과 바닷물
2501.00.10	암염과 천일염(정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2501.00.9010	식염
2501.00.9090	기타소금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HS CODE 「**2501.00.9010**」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2013년 수입 추이

순위	수출국가	무역지표				
		수입액 (1,000 USD)	점유율 (%)	수입량 (톤)	수입단가 (미달러)	수출량증감률 (2012년 대비, %)
	World	88,507		1,922,269		-13.12
1	Australia	73,125	82.62	1,588,514	0.05	-3.22
2	India	13,808	15.60	330,750	0.04	-41.54
3	New Zealand	691	0.78	1,727	0.40	9.78
4	Netherlands	587	0.66	539	2.01	11.97
5	Denmark	143	0.16	352	0.41	700
6	Germany	134	0.15	292	0.25	-31.67
7	Thailand	13	0.02	74	0.18	-50
8	Austria	3	0.00	20	0.16	-
9	Japan	0.655	0.00	0.02	32.75	-99.90
10	China	0	0.00	0	0.00	-100

출처 : Global Trade Atlas (www.gtis.com/gta)

- 인도네시아는 2013년 약 8,850만 7,000 달러 규모의 「식염」을 수입하였으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이 있음
- 인도네시아의 「식염」 최대 수입국은 호주로, 2013년 수입규모는 약 7,312만 5,000 달러이며, 이는 2012년 대비 8.92% 감소한 수치임
- 호주에 이어 인도에서 1,380만 8,000 달러, 뉴질랜드에서 69만 1,000 달러 규모의 「식염」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2년 대비 인도는 45.54% 감소, 뉴질랜드는 15.95% 증가한 수치임
-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일반 소금을 2011년에 소량 수입하기는 했으나, 그 이후로는 수입 통계가 없음
- 「식염」 류 품목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대 호주 제품 수입단가는 kg당 0.05 달러이며, 인도 (0.04 달러), 뉴질랜드 (0.40 달러), 독일 (2.01 달러), 일본 (32.75 달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인도 다음으로 낮은 단가를 보여주고 있음

2. 소금 시장동향

- 인도네시아는 소금 생산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생산량이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며 좋은 품질의 수입 소금에 의존을 많이 해왔음
 - 한때 인도네시아는 소금 소비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점차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수입에만 의존하던 소금을 2012년 이후 소금을 자급하고 있음
 - 2013년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소금 재고가 52만 1,308 톤으로 늘어서 2014년에 소금을 수입할 필요가 없음
 - 2013년 인도네시아 소금 생산량은 132만t이었고, 여기에 2012년 재고 64만 1,700t이 더해져 2013년 공급량은 총 196만t이었음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에 따르면, 2014년 소금 생산량 목표는 330만t이며 정부가 소금 생산자들을 교육해 새로운 여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인도네시아 소금 생산량의 증가와 발전은 민영 소금생산회사들과 국영기업 가람(PT Garam)등이 소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때문
 - 국영 소금회사 PT Garam은 2012년에 동부 누사똥가라 꾸방 해안에 연간 생산량 50 만t 규모의 염전 4,000만Ha를 건설하였음
 - 소금의 주요 산지는 동부자바의 마두라, 남부술라웨시의 즈느뽀또, 서부누사똥가라의 비마, 서부자바의 인드라마유와 짜레본, 중부자바의 림방과 빠띠, 동부자바의 뚜반과 그레식 등지
- 인도네시아의 라이프스타일은 지금 포장 식품을 선호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소금의 소비량과도 연관이 있는데, 소금이 포장 식품에도 많이 첨가 되고 있기 때문
- 하지만 정부에서 소금의 많은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으며 저나트륨 소금을 권장하는 추세
 - 건강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어 저나트륨 소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

3. 소금 경쟁제품 동향

1) Nutrimedindo Neutraceutatama : 인도네시아의 식품 제조 회사

제품 이미지	
제품명	Nutri Garam 300gr
가격	Rp 72,000

2) refina : 인도네시아 소금 제조 회사

<p>제품 이미지</p>	
<p>제품명</p>	<p>Refina Salt Refill 500g</p>
<p>가격</p>	<p>Rp 3,900</p>

3) prima

<p>제품 이미지</p>	
<p>제품명</p>	<p>Prima Garam 250g</p>
<p>가격</p>	<p>Rp 1,900</p>

4) Lodan

<p>제품 이미지</p>	
<p>제품명</p>	<p>LODAN GARAM BERIODIUM 1KG</p>
<p>가격</p>	<p>Rp 6,500</p>

III 인도네시아 가격 정보

□ 인도네시아 소금 판매 현황

-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서 소금을 판매하고 있으나 대체로 각 사이트에서 한 종류의 소금만 판매 하고 있고 여러 종류의 소금을 판매하는 곳을 찾기가 어려움

□ 인도네시아 소금 가격

- 인도네시아에서 소금의 가격은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함.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하락하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상승

□ 온라인 판매 가격

-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소금은 한정되어 있음

업체명	Dolphin	Refina	Miwon
제품 이미지			
제품명	식염	식염	식염
제품특징	250g	500g	500g
가격	Rp 2,000	Rp 3,900	Rp 5,100
	0.17 (USD)	0.33 (USD)	0.43 (USD)

출처 : <http://jarvismall.com/product/2695/bumbu50>

<http://www.sukamart.com/en/food/cooking-baking/salt-sug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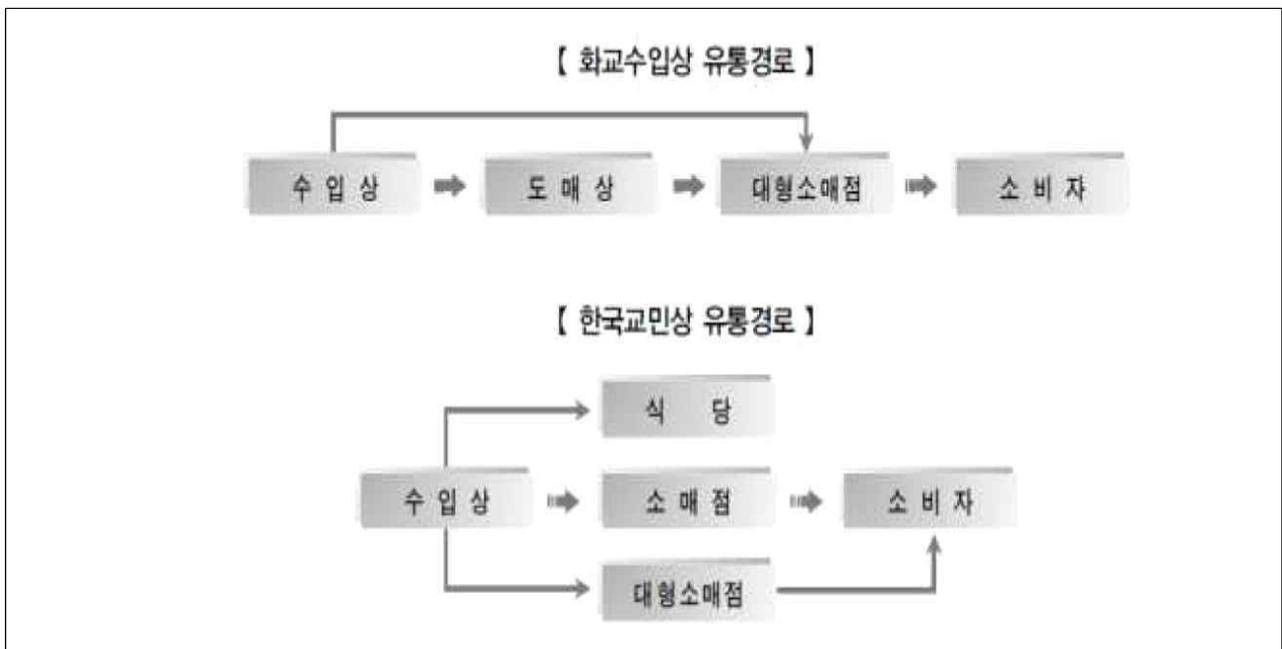
<http://www.solobelanja.com/dolphin-garam-meja-kecil-250-gr.html>

IV 인도네시아 유통 정보

1. 유통 FLOW

- 현지 수입 유통경로는 대형 유통도매시장이 없어 중·&소형 도매상들이 자체 냉장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입상으로부터 직접 구매를 하는 형태이며, 대형업체의 경우 수입업체에서 주문서에 따라 배달하는 형태임
- 물류저장 창고 부족 및 낙후된 도로사정으로 육로를 통한 내륙 운송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수입과일은 자카르타와 일부 근교도시 등에서 소비됨

< 유통절차 >



출처 : KATI (<http://www.kati.net/>)

2. 유통구조

□ 인도네시아 유통동향

- 인도네시아 유통산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4%(CAGR)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6%가 넘는 높은 경제성장과 중산층의 확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소비자들이 재래시장보다는 쇼핑의 편리함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마켓 및 온라인쇼핑 등 현대적 유통채널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짐
- 인도네시아의 대형 쇼핑몰은 소비자들의 원스톱 쇼핑 수요에 부응해 전자제품과 패션 의류는 물론 식품, 의류 등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에 하이퍼마켓 입점을 확대하는 추세
- 최근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현재 10억~30억 달러 규모인 온라인시장 산업은 성장곡선을 그리며 2년 후에는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유통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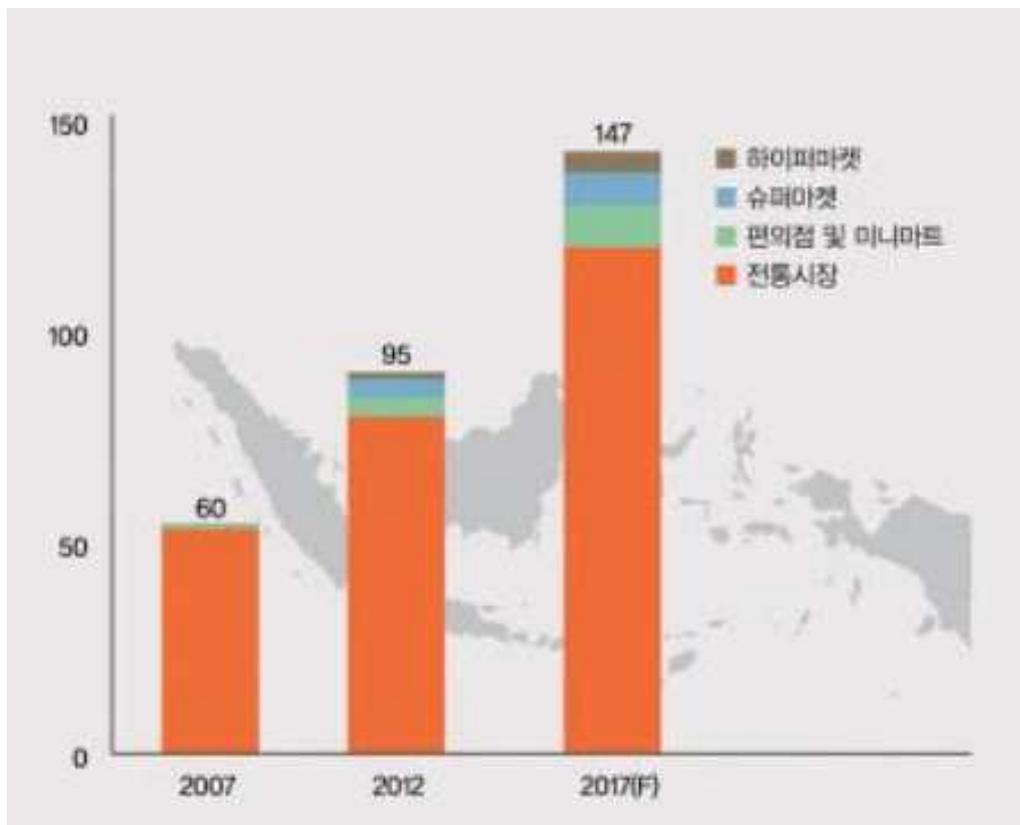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의 현대적 유통채널은 크게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미니마켓(편의점)으로 구성됨
- 하이퍼마켓은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을 결합한 소매점으로 저렴한 가격이 장점임. 슈퍼마켓은 식품 및 가정용품을 소규모로 판매하며, 미니마켓은 슈퍼마켓과 유사한 품목 취급하지만 규모가 작음
- 하이퍼마켓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유통 채널로 성장함. 반면, 슈퍼마켓은 점포 수가 매년 감소하는 등 쇠퇴기를 겪고 있음
- 세계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인도네시아는 2017년까지 인터넷 사용자 수가 두 배인 1억25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스마트폰 사용자도 현재의 20%에서 같은 기간에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인도네시아 e-commerce업체인 Vela Asia은 작년 인도네시아 온라인시장 규모는 미

화 80억 달러 규모였으며, 2016년에는 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주로 의료, 전자제품, 가전제품 및 화장품임. 최근 일부 인터넷쇼핑 업체들은 특정 제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Google 인도네시아와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Talyor Nelson Sofres(TNS)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주로 구입하는 품목은 전자기기나 신발에 비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비교적 적은 의류임

<인도네시아 유통시장 규모 및 채널별 점유율>

(단위 : 10억 달러)



-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유통 시스템 정비가 미흡한 편이나 외국기업의 소매업 참여가 허용된 이후 하이퍼마켓, 까르푸, 롯데마트 등 체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 소매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롯데마트는 2010년 5월 기존 마크로를 인수해 자카르타에 진출한 이후 불과 3년여만에 인도네시아에 32호 매장을 오픈하는 등 엄청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일반적인 유통구조는 지극히 단순하여 수입상이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직접 수요

자에게 판매하거나, 대형 유통업자가 직접 수입하여 수요자에게 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일반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는 입찰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현지 업체가 직접 소요분을 조달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글로벌 브랜드 제품의 경우 대부분 현지에 개설된 대리점이나 지사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 자본재 분야의 전문 상가는 아직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등 최근 시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전문상가들이 빠르게 형성되어 가는 추세임

□ 수입품의 유통마진

- 수입의 경우 직수입과 간접수입이 있으며, 직수입의 경우는 백화점,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원자재 수입 등이 해당됨. 간접수입은 통상 브로커, 에이전트, 정부 대행기관, 등록된 무역상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입대행 수수료는 평균 2~10% 수준임
- 수요자에 의한 직수입이 아닌 간접수입의 경우 수입제품은 통상 수입가격에 15~30%의 마진이 가산되어 소매상 또는 중간규모 유통업체에 인도되며, 여기에 소매상이나 중간 유통업체가 다시 약 30% 정도 마진을 붙이게 되므로 최종 수요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수입가격(CIF)+수입세+부가세+(기타 부과금 및 특소세)+수수료 및 기타경비 등을 포함해 수입가의 약 200%에 이르게 됨
- 이에 따라 통상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이어가 총 수입가의 50~100% 이상의 유통마진을 예상, 기대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므로 바이어와의 가격협상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 시장 특징

① 화교자본이 주도하는 시장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화교 자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화교는 약 1,000만명 이하로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하나 특유의 빼어난 상술로 인도네시아 상권을 장악하고 있음

-
- 1960년대 말 인도네시아 내에서 일어났던 공산당 쿠데타가 진압된 이후 화교들은 공식 진출이 제한되는 등 정치적 탄압을 받아 대부분 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인도네시아 상장 기업 중 화교 자본의 비중이 약 70%에 달할 정도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저가품과 고급품으로 양분된 시장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가격이 소비재 바이어의 가장 중요한 구매결정 요인으로 자리잡아왔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루피아의 평가절하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였음
- 그러나 이후 경제호조에 따른 루피아 평가절상으로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성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자본재와 사치품 분야에 있어서는 가격 못지않게 브랜드나 A/S를 중시하는 고급품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음

V 인도네시아 통관 정보

1. 관세 및 기타 세금

□ 소금 관세율

HS CODE	국문품명	관세율
2501001000	식탁용 소금, 석염	5%
2501009000	기타	8%

□ 인도네시아의 관세 제도

- 인도네시아는 수입물품과 일부 수출물품(ex. 팜오일(crude palm oil), 등나무, 목재, 가죽, 카카오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의 관세청이 발행하는 관세율표에 따라 관세가 부과
-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입관세율이 인하되고 있으나 일부 사회적으로 민감한 품목 또는 산업 보호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높은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음
- 관세율의 종류는 실행세율과 협정세율로 구분

① MFN(Most Favored Nation) Tariff

-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 MFN) 지위를 취득한 모든 국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서 실행세율이라고 함
- WTO 협정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 간에는 MFN 세율이 적용
- 인도네시아의 MFN 세율은 품목에 따라 0%~150%로 규정되어 있으며 크게 산업별로 관세율 체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산업별 관세율 체계>

구분	물품	관세율
자동차	Vehicles	0%~50%
자동차 부분품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15%
전자 / 기계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electrical equipment	0%~15%
신발류	Footwear	5%~25%
주류	Alcoholic beverages	30%~150%
농산품	Agricultural products	0%~25%
기타	Chemical products, Medicine, Rubber products ets	0%~10%

② 협정세율

- 특혜세율로서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MFN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됨

<협정세율 종류>

산업 구분	물품	관세율
ASEAN FTA	AITGA	· ASEAN국가 간 교역 증대를 위해 1993년부터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 · 2010년부터 ASEAN 국가에서 생산된 전 품목에 대해 무관세 실시
ASEAN-China FTA	ACFTA	· 2010년 1월부터 전체 교역량 중 90%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 물품의 관세 완전 철폐 · 농산물, 직물,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중장비 등 일부 민감 품목의 경우 점진적 관세 인하 예정
ASEAN-Korea FTA	AKFTA	·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되어 2012년부터 전체 수입 품목 중 90%에 해당하는 공산품의 관세 완전 철폐 · 일부 민감품목 또는 초민감품목의 경우 3~20%의 관세율 유지 상태 ASEAN-India AIFTA · 2010년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의 80%를 차지하는 전기, 전자, 화학, 기계, 섬유 등의 인도산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 점진적 철폐 · 2016년부터 관세 완전 철폐

2. 수입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 인도네시아의 수입절차 일반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1996 tentang Pangan
- 식품의 생산, 수입, 유통과 관련된 가장 종합적인 법안은 1996년 제정된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품법안 Act No. 7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1996 tentang Pangan) 으로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의 식품관련 핵심법안
- 식품법안(Food Act)에는 식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식품은 생물학적 또는 물을 원천으로 하는 모든 가공 및 미가공 제품으로 인간이 섭취 또는 복용하도록 된 제품으로, 여기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제조, 조리, 가공 공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초 식품재료 이외에 식품 첨가물도 포함 이 된다.”
- 또한 식품법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 - 식품과 관련된 안전, 품질, 영양 등과 같은 기술적 기준, 그리고 식품의 라벨링 및 광고에 관한 규정
- 식품을 생산, 보관, 운송 그리고 유통하는 업자의 책임 및 그 결정내용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적 제재조치
- 소비되는 식품의 다양성 및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역할- 내수소비 및 수출되는 식품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 인도네시아 식품수입 규정은 식품법안의 제5장에서 다루며 인도네시아의 영토 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법안 및 그 시행규정의 조항을 충족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회사만이 수입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수입면허의 주관부서는 무역부이지만, 의약 및 일부 식품과 같은 특별한 제품의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정부 부서의 특수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모든 수입제품들이 까다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요구된다는 어려움이 있음

□ 수입 절차

- 인도네시아는 수입업자가 여러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수입 절차가 복잡함
- 회사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교역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 무역면허)를 먼저 등록하여야 함
- 모든 수입업자들은 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관세청등록번호) 및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수입자등록번호) 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특히, 식품 및 음료 수입업자들은 추가적으로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IP/IT) 면허, 그리고 필요시 별도의 Registered Importer Number를 발급받아야 함

< 수입 절차 >

파트너쉽 형성	기업이 수입업자가 되기 위하여 정부에 등록		수출자는 수입업자에게 제품과 관련된 관계서류 및 증명서 등을 제공
	SUIP		
	NIK		
	API		
수입허가 신청	수입하는 제품에 따라, 수입업자는 해당의 정부부서로부터 개별적인 제품수입허가를 신청		제품 등록 ML 번호
	ITPT	수산물 수입허가	
	IP/IT 원예 제품	IT 동물 제품	
제품의 운송	통 관		
	식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		
	제품의 인도		

□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 : 무역면허)

- 인도네시아에서 교역활동을 수행하려는 회사는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 :무역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 SIUP에는 회사의 활동범위 및 대표자 등이 기재되며, SIUP 발급부서인 산업 무역부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경찰청의 letter of good conduct (적정시민인 증서)를 요구할 수가 있음
- SIUP는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의 One Stop Shop Service (간편 업체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음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 의 신청	
요구 서류	1. 기업 Articles of Association (정관) (사본) 2. 업체 주소 및 위치에 대한 확인서 3. 업체 대표자 혹은 이사의 신분증 (사본) 4. 공증된 문서
신청서 처리 소요기간	5-9 근무일
신청 비용	비용은 협상이 가능하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최소 IDR 400,000-IDR500,000, 중견기업의 경우 최소 IDR 600,000-IDR700,000, 대형기업의 경우 최소 IDR750,000-IDR1,000,000에서 출발

□ 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NIK : 관세청 등록번호)

- NIK는 관세청의 정보기술 및 입력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등록번호
- “관세청 등록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수입업자, 수출업자 및 관세청 이용자는 인도네시아 관세청(DGCE)으로부터 관세청 등록번호(Nomor Induk Kepabeanan, NIK)를 발급받아야 함 : 인도네시아 재무부 규정 No. 63/PMK/4/2011
- NIK 신청을 하려는 수입업자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관세청 서비스이용자 의 내용, 임원 및 담당자의 신원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약 14일이 소요
- NIK는 관세청이 취소결정을 내리기까지 유효.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NIK를 취소할 수 있음
 - 수입업자가 연속된 12개월의 기간 동안 관세청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수입업자의 제출된 자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수입업자가 관세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 수입업자의 사업면허가 만료가 된 경우
- 취소 된 NIK는 취소결정이 발생한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복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 NIK를 회복 할 수 있음
 - 서비스이용자가 관세청 관련 활동의 사실을 증명할 경우

- 서비스이용자가 관세청 등록 자료에 대한 변경신고를 제출하여, 동 변경내용이 관세청에 의해 이미 승인이 된 경우
- 서비스이용자가 관세청 관련 형사위반 사안으로 이미 조사를 받았고, 무죄가 확정된 경우
- 서비스이용자의 사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이미 연장된 경우

□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API : 수입업자 등록번호)

- NIK와 더불어 수입업자 등록번호(API)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No. 54M-DAG/PER/9/2009 “수입업자 등록번호 관련” 규정에는 API가 있는 수입업자만이 수입을 할 수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관측제품, 연구개발목적의 제품, 자가 섭취의 제품, 일시적인 기간 동안 특정 제품 또는 빈도가 적은 수입과 같이 특수한 경우는 API 없이도 수입이 가능
- 장기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API의 취득이 필수적
- API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BKPM) 산하 통합서비스국(PTSP)에서 신청하며, 수입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유효. 갱신 신청은 5년 단위로 이루어짐
- API는 API-U, API-P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수입업자는 하나의 API만을 발급받을 수 있음
- API-U는 무역 혹은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이 되며, API-P는 원재료, 부재료 혹은 가공공정을 위해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이 됨
-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에게는 문서형식으로 API 번호가 통지가 됨. 한국의 수출자들은 인도네시아 업체와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협력하려는 수입업자의 API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
- API를 발급받은 업체들은 국제 무역 협력국에 매 3개월 단위로 수입내용을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 수입업자의 API는 취소가 될 수가 있음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API) 의 신청

요구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증된 기업 Memorandum of Association (설립취지서) (사본) 2. 소재 지역 관할청에서 발급한 기업본사 소재지증명서 (사본) 3. 투자 등록서 (사본) 4. 투자 Approval in Principle (기본승인서) (사본) 5. BKPM에서 발급한 사업면허 (사본) 6. 납세자 ID 번호 (NPWP) (사본) 7. 기업 등록 증명서 (TDP) (사본) 8. 이사회 임원의 주민 ID 카드 혹은 여권 (사본) 9. IMTA (사본) 10. 이사회 전원의 붉은색 바탕의 3x4 사진 2매
신청서 처리 소요기간	5 근무일
신청 비용	IDR 6,000
유효 기간	5년

-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에게는 문서형식으로 API 번호가 통지가 됨. 한국의 수출자들은 인도네시아 업체와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협력하려는 수입업자의 API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
- API를 발급받은 업체들은 국제 무역 협력국에 매 3개월 단위로 수입내용을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 수입업자의 API는 취소가 될 수가 있음
- API를 발급받은 업체들은 국제 무역 협력국에 매 3개월 단위로 수입내용을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 수입업자의 API는 취소가 될 수가 있음
 - API가 2회에 걸쳐 효력정지를 당했을 경우
 - API가 효력정지를 당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등록 의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 보고 의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 API 신청서에 허위 정보 또는 자료를 기재하였을 경우
 - 수입 물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 수입관련 규정 및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수입 및 수입관련 서류를 악용한 경우
 - API의 악용과 관련된 범죄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Special Importer Identity Number (NPIK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 특수 분류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업자는 NPIK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해당 증명서가 없으면 수입 품목은 항구에서 역류 조치됨
- 특수품목에는 옥수수, 쌀, 대두, 설탕, 섬유 및 관련제품, 신발, 전자 및 완구가 포함되며, 동 조치는 국내 제조업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해당 제품들의 대규모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NPIK를 신청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들은 MoT 산하 국제 무역 협력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Special Importer Identity Number (NPIK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의 신청	
요구 서류	1. API-U를 취득한 업체 - API-U - 최근 5년간 사이의 2개년 연속 수입활동수행에 관한 보고서, 또는, 최근 1년간의 수입활동수행에 관한 보고서 및 차기 1년간 해외 교역 파트너와의 구매계약서 2. API-P를 취득한 업체 - API-P - 산업활동 허가서
신청서 처리 소요기간	10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5년

- 수입업자의 신청서가 승인이 되면, 수입업자에게 NPIK가 발급이 됨
- NPIK를 보유한 수입업자는 매월 15일에 국제 무역 협력국에 수입활동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다음의 경우에 NPIK는 취소될 수가 있음
 - NPIK의 내용에 변경, 추가, 대체를 하는 행위
 - NPIK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소불가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 Product Registration (ML Number : 제품등록번호)

- 소비자보호법(1999)에 따라, 모든 수입제품은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Badan Pengawas Obatdan Makanan (BPOM) : 국가 의약품관리청)에 등록해야 함
- 수입제품은 통관 이전에 BPOM에 등록 완료해야 하며, 해당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함. 미등록된 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자는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과금을 부과 받음

□ Makanan Luar (ML : 제품등록)

- 예외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은 ML을 발급받아야 함. 예외품목은 다음과 같음
 - 상온에서 7일 이하의 유통기한을 가진 가공식품
 - 정부 또는 사회기관에 대한 기부행위의 가공식품
 - BPOM 등록, 연구 혹은 개인섭취 등의 특수목적을 위해 수입되는 소량의 가공 식품
- ML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불만접수에 따라, BPOM은 당국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미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BPOM의 승인을 받지 못한 식품제품에 대하여 임시 ML을 발급하기도 하였음
- 2000년 7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비자보호법(1999) 시행에 들어가 수입 식품제품의 제품등록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며 모든 수입 식품제품들은 BPOM의 시험절차를 거쳐야 함
- BPOM에서 제품등록신청을 받은 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Form M8을 발급함.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 신청내용은 Form M9과 함께 반려가 됨
- 모든 제품은 BPOM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신청자 부담으로 시험검사를 거치며 시험검사 비용은 품목당 IDR 50,000 - IDR 2,500,000, 제품당 IDR 1,000,000 - IDR 10,000,000에 이름
- 모든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BPOM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발급함

- Form M1 : 제품등록신청이 승인이 된 경우
- Form M2 : 제품등록신청이 조건부로 승인이 된 경우
- Form M3 : 제품등록이 거부된 경우

Makanan Luar (제품등록) 번호의 신청	
요구 서류	1. 식품의 견본 2. 해당할 경우, 라벨 (10매) 및 카탈로그 3. 재포장되는 제품의 경우, 재포장을 하는 인도네시아 사업체의 사업면허 및 제품생산 공장의 추천서 4. 라이선스 생산의 경우,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사업체의 사업면허 및 라인센스를 보유한 해외공장의 추천서 5. 수입제품의 경우, 생산 공장의 추천서, 위생증명서 및 법규에 따른 방사능 무오염 증명서 6. 완성된 제품등록 서류 7. 다음과 같은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 A : 식품에 대한 일반정보,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공장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 양식 B : 제품의 성분 및 품질, 그리고 포장방법 - 양식 C : 내포장의 청결처리방법 및 봉합방법 등을 포함한 생산 공정 - 양식 D : 품질관리 및 최종검사 절차 - 양식 E :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견본의 내용
신청서 처리 소요기간	6개월 이상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제품은 매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함

□ 수입 통관 절차

- 해외의 출발지로부터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으로 도착하는 모든 물품은 수입으로 간주되며, 수입관세의 대상이 됨. 인도네시아에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서류 및 실물제품에 대한 검사 등의 관세청 확인이 이루어짐

< 관세청 통관 절차 >

도착전	관세항구 도착	하역	수입관세 및 제세	화물 검사	인도	인수
도착 24시간 이전에 관세청에 통보	관세신고서 제출	관세청 지정지역에 하역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	물품의 서류 및 실물 검사	관세청지역으로 물품인도	관세청으로부터 물품인수

① 도착 전

- 운송수단이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으로 진입하기 최소 24시간 이전에, 운송사는 관세청에 운송수단의 도착예정을 통보해야 함. 통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의 상호 · 항공편, 선박편 등의 운송수단의 식별번호 · 운송수단의 명칭 · 출발항 ·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진입직전의 최종 기착지 · 목적항 · 운송수단의 도착예정일 · 하역예정의 포장개수, 컨테이너 수 또는 벌크물품의 물량 ·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내의 다음 목적항

② 관세 항구 도착

- 운송수단이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선적된 모든 화물 및 부속물과 관련하여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세관신고서는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며, 선박도착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항공기 도착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육로운송의 경우에는 즉시 제출해야 함
- 세관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단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함

- 운송수단의 승객 및 승무원의 명단
- 운송수단의 연료/식량 공급계획
- 운송수단의 적재계획
- 총기류의 목록
- 마약류를 포함하는 치료용 의약품의 목록

③ 수입물품의 하역

- 수입된 물품은 조사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 세관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 하역할 수가 있음. 운송사는 12시간 이내에 하역된 컨테이너 혹은 벌크물량의 수기 또는 전자목록을 관세청에게 제출함

④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

- 수입업자는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 제세 및 부가세 등을 계산한 수입신고서(PIB)를 준비함. 수입신고서 제출 시 관세청이용자요금(Penerimaan Negara Bukan Pajak)을 내는데 이는 전자데이터교환(EDI)의 접속이용료로, 수출입 활동 자동화를 위한 IT 업무의 전송 및 유지를 위한 비용임
- 수입업자는 PIB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른 수입관세를 정산하여야 함. 다음은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제세임

- 수입관세 : 수입되는 물품의 유형에 따라 0% - 170%의 요율이 적용
- 부가가치세 (VAT) : 요율은 0% - 10%
- 사치품 판매세 (STLG) : 제품의 유형에 따라 10%, 20%, 35%, 40% 혹은 50% 등이 적용
- 소득세 (PPH) : 등록된 수입업자는 2.5%, 미등록된 수입업자는 7.5%

- 위에 열거된 수입관세 및 제세는 PIB를 제출하기 전에 허가된 외환은행을 통해서 혹은 관세청 서비스사무소를 통해서 납부
- EDI 시스템이 전면시행 되고 있는 Tanjung Priok 항구 및 Soekarno- Hatta 공항에서는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는 전자결제를 이용

⑤ 화물 검사

- 수입업자가 PIB를 제출하면, 관세청 직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 및 상업송장, 포장 명세, 수입관세 및 제세 납부 증거자료 등의 첨부문서들을 검토. 관세청 직원의 판단에 따라 물품의 실물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

⑥ 수입물품의 인도

- 관세청이 승인하면 수입된 물품이 인도 됨. 수입물품의 인도시점은 화물 대기 순서 분류에 따른다.
- 공식규정에는 MITA 일반(5 근무일)이외에는, 수입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은 3근무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절차는 이보다는 빠르며 실제로 녹색통로의 경우 화물을 인도받기까지 일반적으로 30분이 걸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색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 및 문서확인 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 (SPJM) 이 발급되고 화물이 인도됨 2. 황색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는 생략이 되고, 문서확인 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 (SPJK) 이 발급되고 화물이 인도됨 3. 녹색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는 생략이 되고, 문서확인 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 (SPPB) 이 발급되고 화물이 인도됨 4. MITA 일반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 및 문서 확인 없이 화물이 일반 순위-주요 파트너에게 인도가 됨 5. MITA 우선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 및 문서 확인 없이 화물이 우선순위-주요 파트너에게 인도가 됨

⑦ 물품의 인수

- 물품은 하역일로부터 최장 2개월의 기간 동안 함구의 임시창고(창고 혹은 노상장소)에 보관될 수 있음
- 그러나 Tanjung Priok 항의 경우, 임시보관의 최 장기간은 1개월이므로 지정된 기간 내에 통관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은 소유권자가 없는 물품으로 분류되어 관세청이 제거, 폐기, 재수출 혹은 경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수출 통관 절차

-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모든 물품은 수출통관 대상. 수출통관 절차는 수입 통관 절차와 유사하며 수출자가 EDI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출신고하면 세관에서 심사를 거쳐 현장 서면심사와 일부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및 검사를 진행하여 수출통관

이 완료됨

① MOU 체결

-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도네시아 세관과 MOU를 체결하여야 함. MOU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2주 정도
- 세관과 수출 MOU가 체결되지 않은 기업은 수출이 불가능하므로, 선적일자를 고려하여 미리 MOU 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MOU 체결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MOU 체결 요청서(Surat Permohonan)
 - 법인 정관(Akte Perusahaan)
 - 납세자번호 및 일반과세자 증명서(Npwp & Pkp)
 - 사업허가서 및 법인등록증(Siup & Tdp)
 - 법무부승인서(Sk Badan Hukum)
 - 수출신고서 서명권자 확인서(Surat Kuasa Penanggung Jawab Peb)
 - 회사 소개서(Company Profile)
 - 회사 조직도(COmpany Organization)

② 선복 예약

- 수출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선적 일정을 확인한 이후, 선사 혹은 포워더에 선복 예약을 해야 함
- 선복 예약을 하면 선사로 가서 D/O(Delivery Order) 및 컨테이너 봉인(Container Seal)을 수령한 후 선사가 지정한 컨테이너 선착장에서 Lift on Charge를 지불한 후 컨테이너를 수령하여 공장으로 운송할 수 있음
- 공장으로 운송한 컨테이너에 수출물품을 적재하면 선적 준비가 완료

③ 수출신고

- 수출자는 수출신고서 작성 및 세관 전송, 수출승인 절차를 선복 예약과 동시에 진행해야 함

- 수출신고서(PERMBERITAHUAN EXPOR BARANG, PEB) : 수출자는 수출통관시 수출신고서에 물품 명칭,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목적지 등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인 상업송장, 선적서류, 포장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관에 전송
- 수출승인서(PERSETUJUAN EXPOR, PE) : 세관에서는 전송받은 수출신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수출승인서를 수출자에게 전송

④ 세관공무원의 확인

- 화물 Stuffing 이후 수출자는 수출화물과 함께 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 Invoice, Packing Lis를 부두/공항으로 보냄
- 화물이 부두/공항에 입고되기 전 Lift Off 혹은 창고료를 지불하고, 수출 담당 세관공무원의 최종 확인 절차를 받으면, 수출 통관절차가 완료
- 다만 보세법인의 경우 서류 심사에 추가하여, 화물 출고 전 보세구역 상주 세관공무원의 수출 화물 검사를 받아야 함

□ 수출관세

-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원유출 방지, 국제시장에서의 자원 수요 증대, 국내 시장 안정 등의 목적을 위해 일부 물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
- 현재 수출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팜오일(crude palm oil), 등나무, 목재, 가죽, 카카오 등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생산되는 1차상품입
- 수출관세율은 수출 가격의 최고 60% 까지 부과되지만 인도네시아는 IMF와의 협약으로 수출관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
- 대표적으로 목재의 경우 기존 수출관세율이 200%였지만 현재는 10%로 인하되었으며,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팜 오일의 수출관세율은 현재 20%로 인상

□ 수출 제한

- 수출허가를 받은 회사는 쌀, 흙, 보호 야생동물 등 일부 수출제한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을 규제 없이 수출할 수 있음

- 다만, 수입국의 쿼터(Quota)대상이거나 다른 국가와 인도네시아 간의 쿼터제 협약이 되어 있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 허가를 받아야 함
- 부분 가공된 금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검열없이 수출 가능하지만, 금가루나 금으로 된 주형 등은 수출시 검열 대상

□ 수출 취하

- 수출통관이 완료된 이후에 수출물품이 미선적 등 기타 사유로 인해서 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을 취하 할 수 있음
- 수출자는 보세 구역으로 수출물품을 운송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세관에 서면으로 수출취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VI 인도네시아 검역 정보

□ 검역 절차

- 인도네시아 법안 No.16 (1992) - “동물, 수산물 및 식물의 검역 관련” 은 수생 종을 포함한 동물 및 식물의 수입, 수출 및 이전과 관련된 검역 요구조건을 정의
-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 검역부문의 최상위 법안
- 동 법안의 시행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검역제도 및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장관규정 및 결의, 소관부서 결정사항 등을 계속 발표하고 있음
- 농림부 산하 인도네시아 농림검역청 (IAAQ)은 검역제도의 중심 집행기구이며, 해양수산부는 산하의 검역, 품질관리 및 수산제품안전청을 통해 수산 제품을 규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관련 조례 및 규정의 변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검역제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신선 과일 및 채소는, 이전에는 8개의 관세 항구를 통해 인도네시아 반입할 수가 있었으나, 현재는 4개의 관세항구를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
- 검역절차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들이 제출 또는 작성되어야 함
- 요구되는 서류는 수입되는 제품의 유형에 따르며 일부의 서류양식 및 요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
 - 운송수단 / 목재포장재 / PSAT 확인서
 - 식물검역시행절차 / 안전감독 / PSAT 승인서
 - 화물하역 승인서
 - 훈증 증명서
 - 소독 증명서
 - 식물 검역 증명서
 - 운송수단 도착 보고서
 - 원산지 및 경유지 국가의 건강 증명서

< 인도네시아 검역 절차 >

검사	인가된 기관에서 요구 서류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역대상이 되는 제품의 특성을 파악
격리	장기간, 특수시설, 제어된 환경조건 등을 요구하는 검역대상 제품은 격리되어질 수가 있음
관찰	격리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 관찰이 진행 됨
처리	- 검역대상의 제품은 다음의 경우에 처리가 됨 1.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오염 / 감염 또는 오염 / 감염되었다고 의심이 갈 경우 2.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다고 의심이 갈 경우
역류	- 인도네시아에의 수입 요구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못하였을 경우 검역대상 제품이 됨 - 정부는 수입업자에게 규정충족을 위해 허용되는 기간을 명시
거부	-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은 거부가 됨 1. 검사결과, 검역대상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혹은 질병에 오염 또는 감염 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어 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2. 요구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3. 역류 조치 이후,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4. 운송수단 내에서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폐기	- 다음의 경우, 제품은 폐기가 됨 1.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이 되고, 후속적인 검사에서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감염이 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2. 입국 거부 이후에, 지정된 기간 이내에 소유주가 해당 제품을 인도네시아 영외 또는 목적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송하지 않을 경우 3. 격리 후 관찰에서,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의 오염/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 4. 운송수단에서 하역 후 추가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인도	- 제품이 오염 또는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경우, 제품은 인도가 됨 - 수입업자가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인도증명서가 발급이 됨

- 마늘, 완구콩, 식물의 구근, 옥수수, 세이고우, 야자줄기 및 타피오카 뿌리에서 추출한 전분가루, 기름추출용 씨앗, 식품성 기름, 지방산, 타피오카, 비료 및 사료용의 기름찌꺼기, 가공되지 않은 담배, **소금**, 생고무 및 가공고무, 조리된 과일 및 야채, 과일 주스, 커피 및 차, 조리된 고기 및 생선, 비알콜음료 : 농업부나 무역부의 수입허가 필요

Ⅶ 인도네시아 라벨링 정보

□ 식품 라벨링 규정 No. 69 (1999) - “식품 라벨링 및 광고”

- 2010년에 인도네시아 제품 라벨링을 관장하는 주요 기관인 BPOM은 관세청 회람 No.SE-19/BC/2010 - “수입 식품 및 음료 제품의 의무적 라벨링에 관한 확인”을 통하여 수입되는 식품 및 음료 제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음
- 식품 라벨링 및 광고 규정(1999)에 따라, 식품 라벨링은 다음의 최소한의 정보를 표기하여야 함
 - 제품의 명칭
 - 미터법에 의한 순중량 또는 순용량
 -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 등록번호 성분표 혹은 성분 목록
 - 제품의 유통기일
 - 생산일자 혹은 생산번호
- 수입제품의 라벨링에 사용되는 언어는 인도네시아어, 아라비아 숫자 혹은 라틴어로 제한됨
- 식품 라벨링의 구체적 내용 이외에, 소비자 보호법(1999)은 오해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한 일반 금지조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금지조항들은 광범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을 비윤리적 기업사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무역부 규정 No.62/M-Dag/Per/12/2009 - “제품 라벨링 의무 관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포장식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식품에 “halal”을 표기하고자 하면 동 내용에 대한 별도의 라벨링을 해야 함
- 인도네시아는 돼지고기를 제외한 수입 육류 제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의 인가된 halal인증기관이 발급한 Halal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목록은 halal-인증기관을 3개의 분류로 구분
 - 소 도축 halal 인증
 - 가공산업 halal 인증

- 향신료 halal 인증

- 수입업자는 인도네시아어가 포함이 된 라벨링 견본을 국내교역국에 제출하고 라벨링 견본이 승인이 되면, 5 근무일 이내로 라벨링 인증서가 발급이 됨

□ 라벨링 요구조건

- 식품라벨링 조건은 매우 광범위하여 제품의 유형에 따라 라벨링 요구조건이 상이함
- 라벨링 요구조건은 소매목적의 포장식품에만 해당 되며 다량 구매 혹은 업소/기관용 식품제품은 방사선조사 및 식품첨가제의 규정만 적용 받음
-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포장식품은 제품의 영양소 내용을 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영양소 라벨링은 규정 No.62(1999) - “식품 라벨링 및 광고”의 적용을 받음
- 영양소 정보표시는 비타민, 미네랄, 기타 영양소 보충제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름. 지방분, 단백질, 탄수화물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양에 기초한 전체 에너지양, 소금,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섬유질, 설탕,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의 총량
- 건강혜택에 관한 주장은 제품의 성분 및 일상적 일일 섭취량에 근거해야 하며, 암시적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 영양 및 건강 홍보 문구는 영양소 주장의 요구조건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가능
 - 영양 내용 : 제품의 1회 섭취량이 일일 영양소 기준치의 최소 5%를 포함할 경우
 - 낮은 칼로리 :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칼로리량이 25% 이상 적을 경우
 - 저 칼로리 : 제품의 1회 섭취량의 칼로리량이 40kcal 이하인 경우
 - 무 칼로리 : 제품의 1회 섭취량의 칼로리량이 5kcal 이하인 경우
 - 단백질 증강 : 제품의 칼로리량 중 20% 이상이 단백질이며, 1회 섭취량에 최소 10그램의 단백질이 포함될 경우
 - 낮은 지방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지방이 3그램 이하이거나, 1회 섭취량이 50그램 이하일 때 총 50그램의 경우
 - 무 지방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지방이 0.5그램 이하일 경우
 - 낮은 포화지방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포화지방이 1그램 이하이며, 칼로리의

총량 중 포화지방의 칼로리가 15% 미만일 경우, 또는, 스낵 혹은 음식제품의 100 그램당 포화지방이 1그램 이하 이며, 칼로리의 총량 중 포화지방의 칼로리가 10% 미만의 경우

- 적은 포화지방 :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포화지방 함량이 25% 이상 적을 경우
 - 무 포화지방 : 제품이 100 그램/100 ml 당 포화지방 함량이 0.5 그램 이하일 경우
 - 낮은 콜레스테롤 :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25% 이상 적고, 1회 섭취량의 포화지방 함량이 2 그램 이하일 경우
 - 저 콜레스테롤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콜레스테롤량이 20 밀리그램 이하 이고, 포화지방 함량이 2 그램 이하이거나, 또는, 1회 섭취량이 50 그램 이하일 때 총 50 그램의 경우
 - 무 콜레스테롤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콜레스테롤량이 2밀리그램 이하일 경우
- 건강홍보문구는 적법한 연구에 의해 증명되어야 함. 오해의 소지가 없는 기능성 주장만이 가능하며 허용되는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표현은 다음과 같음

건강 표시 사례	
<p>허용되는 표현 -</p> <p>칼슘은 튼튼한 뼈 및 치아의 발달에 도움이 됨.</p> <p>단백질은 신체조직의 발달 및 회복에 도움이 됨.</p> <p>철은 적혈구 형성의 요인</p> <p>비타민 E는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p>	<p>허용되지 않는 표현 -</p> <p>자연섬유질이 포함된 음식은 건강 및 활력을 향상시켜줌</p> <p>아동 및 유아용 DHA 함유 식품은 뇌세포 및 지능의 증가에 도움이 됨</p> <p>간장은 IQ를 향상시킴</p>

- 제품별 구체적인 라벨링 요구조건

- 돼지고기가 함유된 식품 : 붉은색 사각 박스 안에 돼지의 그림과 함께 붉은색, universe medium corps 12폰트로, “MENGANDUNG BABI” (돼지고기 함유)의 표시가 있어야 함
- 가당 연유 : 붉은색 사각 박스 안에 붉은 색, universe medium corps 8폰트로, “Perhatikan! Tidak Cocok untuk Bayi” (주의!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음)의 표시가 있어야 함
- 알콜 음료의 경우, 라벨링에 “MINUMAN BERALKOHOL, DIBAWAH UMUR 21 TAHUN ATAU WANITA HAMIL DILARANG MINUM” (21세 미만 및 임신부에

의한 사용 금지)라는 문구가 있어야 함

- 방사선 조사된 포장식품은 “RADURA: PANGAN IRADIASI” (방사선조사 식품)의 문구, 방사선조사의 이유 및 해당의 로고가 표시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방사선시설의 상호 및 주소, 방사선조사의 년, 월 및 방사선조사가 실시된 국가 등의 정보도 포함이 되어져야 함
- 식품이 재-방사선조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라벨링에는 “TIDAK BOLEH DIRADIASI ULANG” (재-방사선조사 불가)의 문구가 있어야함
- 유전자 조작으로 발생된 식품은, 라벨링에 “PANGAN REKAYASA GENETIKA” (유전자조작식품)의 문구가 포함되어져야 함
- 식품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표준을 충족한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포장재에 “Halal”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함



□ 라벨링 사례

라벨링 사례 : 과일 주스

1. 제품 명칭
2. 성분
3. 용량
4. BPOM 등록번호
5. 수입자
6. 영양소 정보
7. Halal 인증
8. 유통기한

라벨링 사례 : 포장 식품

1. 제품 명칭
2. 재료
3. 용량
4. BPOM 등록번호
5. 영양소 정보
6. 유통기한

VIII 인도네시아 바이어 정보

※ 바이어 리스트는 별도 엑셀 파일로 작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인도네시아 농림부 : www.deptan.go.id
- 인도네시아 관세청 : www.beacukai.go.id
- Ministry of Trade(무역부) : www.kemendag.go.id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 www.kkp.go.id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www.qia.go.kr
- 농수산물식품 수출지원정보 : <http://www.kati.net/>
- 관세청 : www.customs.go.kr
- GTA : <http://www.tradestatistics.com/gta/>